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수진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 - 0112호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소셜 임팩트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수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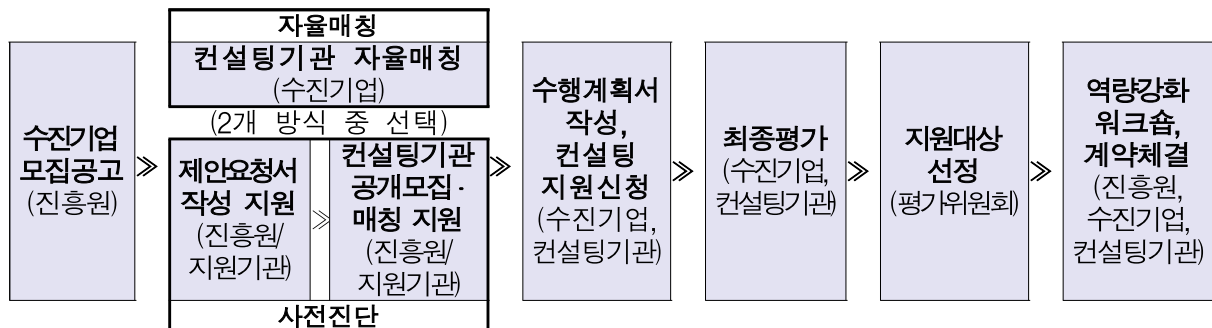
가.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경영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형 컨설팅)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주제와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신청
 - ('22년 추진방향) 전략, 판로, 자금연계 등 기존 컨설팅 주제와 함께 새로운 경영 환경 대응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진단과 컨설팅 전후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활용도 제고
 - 1)디지털전환, 2)저탄소·환경, 3)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4)소셜 임팩트 측정·고도화, 5)ESG 진단·개선 등
- * 4) 소셜 임팩트 측정·고도화: SVI 측정사업과 별개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고유한 소셜 임팩트 관련 지표 개발 및 고도화
- 사전진단 상시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안 진단, 주제 선정, 기관 매칭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상세 내용 3p, [참고6] 참조)
- 진흥원 내외부 자원 또는 유관 사업간 전후 연계를 통해 컨설팅 성과를 극대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

나. 지원 내용

-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흥원의 컨설팅기관 Pool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신청기업(수진기업) 규모에 따른 구분
 - (지속성장형) 단일 기업의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신청기업의 경영 현안에 대한 집중적 컨설팅 지원
 - (공동형)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10개 이하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별도 공고 통해 모집, 컨설팅 비용과 공동 사업비 지원
 - 수진기업 신청 전 준비 절차
 - (자율매칭) 사회적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기관을 사전에 섭외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SEIS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
 - (사전진단) 컨설팅 주제 선정 및 컨설팅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전문 진단을 거쳐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3p, 17p 참조)
 - (지원내용) 금액의 한도 없이 컨설팅 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당 연 1회, 누적 5회까지 지원
 - ※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 원 이내 지원(최대 지원 횟수는 동일)
 - ※ 1회 이상 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업일 경우 이전에 지원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 '22년 표준형, 자율형, 협업활성화 컨설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연계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이후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 부처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

<자율형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요>



□ 컨설팅기관과 매칭을 완료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주제 선정, 기관 선택 등 준비절차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신청은 선택 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사전진단 지원 안내>

□ (사전진단이란?) 전문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나 주제 선정, 컨설팅기관 매칭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전문기관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

- 1) 정확한 기업 문제 진단, 2) 컨설팅과제 명확화, 3) 적합한 컨설팅기관 매칭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진단 제공

- 사전진단은 **별도의 비용부담, 선정절차 없이**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

□ (사전진단 신청방법) 별도 사전진단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문 확인

* 공고명: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사전진단 신청 공고”

- (공고 바로가기(상세보기 클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http://socialenterprise.or.kr)

*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사전진단“ 검색

- (신청절차) 해당 공고에서 “사전진단 신청서”를 통해 간단히 기업 수요에 대해 작성하여, 공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 주소를 통해 제출

- (신청서 작성) 컨설팅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

※ 사전진단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 신청서 항목은 본 공고문의 [참고 6]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청 시 사전진단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수진기업 공모 내용

□ (지원 대상) 총 예산 680,000,000원 내외, 60개 내외 과제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의 심화 과제
공동형	2~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 제1차 선정 결과는 기 공지된 공고문 참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우대 가점) 최대 5점 부여(공동형은 적용하지 않음)

점수	가점 항목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기본·확장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 ■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 자율형 전문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신청기업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신청 시 해당사항에 표기하지 않은 가점은 추후 인정되지 않음

** 3점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를 해당 유관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첨부

□ 지원 조건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컨설팅 수행기간
지속성장형	제한 없음 (단,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000만 원)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세부 계산방법 산출방식 참조)	~11.04.
공동형			

※ 신청기관은 2022년 11월 4일 이전까지 컨설팅 과업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수행계획과 예산 규모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예산 및 자부담 산출방식

총사업비	자부담 비율	최대 기업부담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 (예산 산출)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컨설팅 투입일(MD)”의 총 합계

※ 컨설팅 과제 총 비용에 비례하여 기업 부담금액이 달라짐을 인지하여 반드시 별첨하는 “자부담금액 계산기.xls” 사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확인

※ 단, 긴급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군·구·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 기타 진흥원장 또는 경영컨설팅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 할 경우

□ (신청·접수 마감) **공고일 ~ 6. 16. (목) 17:00 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pdf”(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마감 2~3일 전 신청 요망

○ (유의사항) 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섭외하여 매칭 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신청기업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 컨설팅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서류 종류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1. 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SEIS 작성 (별도 파일첨부 ×)	해당 없음
2. 신청기업 컨설팅 수요 기술서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해당 없음
3.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해당 있을 시	해당 없음
4. 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필수	

서류 종류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5.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	필수	필수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필수	필수
7.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공동형 참여기업 전체)	해당 없음
8.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최근 결산 완료 회계연도부터)	필수 (공동형 총괄기업)	해당 없음
9.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공동형은 가점 미적용)	해당 있을 시 (공동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별지 제7호 서식】	공동형에 한함	해당 없음

※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압축(zip)하여 SEIS의 해당 칸에 첨부
 ※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은 [참고 5]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컨설턴트 1일 기준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VAT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컨설팅 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2등급 이상)가 담당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단,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현장 투입일의 50%(전체 투입일 35%)까지 비대면 화상 컨설팅 활용 가능)
-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참여 컨설턴트는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 이내에서 인정
(단, 공동형 컨설팅의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쳐 40% 초과하여 인정가능)
- 참여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아래의 경우 면제 가능
 - 진흥원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중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관 소속 컨설턴트(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
 - 직전년도 컨설팅 수행결과 종합 점수가 상위 10%인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
- 교육자료 개발, 매뉴얼 개발,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단순 유통채널 확보,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진기업
- 당해연도 컨설팅기관으로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최대 5회)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마)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4

수진기업(지원대상) 선정 절차

□ 선정 일정

- 신청한 컨설팅 주제 및 과업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최종평가(PT평가)를 거쳐 수진기업 선정 실시
 - ※ 공고 종료 후 1주 내외에 PT평가 실시 예정(구체적 내용 신청기업 개별 추가 안내)
 - ※ 단,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PT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PT평가 일정 조정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 최종 PT평가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지
- (결과발표)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 (유의사항) 평가 시 사회적기업(총괄책임자)과 컨설팅기관(과제 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
 - ※ 선정평가 시 사회적기업의 대표(또는 지정한 대리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최종선정)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점(최종평가 점수+우대가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수진기업(지원 대상)을 선정함
 -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컨설팅 내용 및 기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 수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및 추진의지 (30)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10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10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10
	결과의 활용가능성 (10)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10
	소 계		40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	수행방안 (25)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10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KPI) 적절성	5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5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5
	사업관리방안 (15)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5
	사업예산 (5)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투입일) 산정의 적정성	5
	사업완료 (15)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5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소 계		60
총계		100	

5**선정 이후 행정 사항(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 최종 수진기업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절차

① 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

- 수진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 대상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숙지 사항, 컨설팅 효과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② 진흥원·수진기업(사회적기업)·컨설팅기관 간 수행 협약 체결

- 진흥원·수진기업(총괄기업)·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총 수행 협약기간: 2022.11.30.까지(최종평가 및 정산 등 행정절차 포함기간)

③ 컨설팅 착수 및 수행

※ 컨설팅 과제 투입은 2022.11.04.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

④ 모니터링 및 점검(진흥원, 운영지원기관)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 일정 및 컨설팅 계획을 바탕으로 컨설팅 진행 경과에 대한 정기·상시 점검 실시

⑤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 확인 및 비용 지급

-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중 진행 경과 관리, 중간·완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 실시

⑥ 컨설팅 비용 지급

- 진흥원은 컨설팅 비용 총액 70% 이내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을 거쳐 잔금을 지급함

⑦ 자치단체, 부처별 사업 연계 정보 제공

-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 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

6

기타 안내사항

□ 추가 공고 및 지원사업 선정 규모

○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 공고 실시 가능

- '22년 총 60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총 예산 680,000,000원 내외(수진기업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금 기준)

□ 문의처

신청 및 접수 문의 (비소사이어티 주식회사)	02-2088-4503
공고 및 사업 수행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성장팀)	031-697-7852
SEIS 접속장애, 로그인 등 오류 문의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기업 정보 및 컨설팅 사업 내용 관련 활용 안내

○ 진흥원은 본 사업 참여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계사업 정보 제공, 우수 컨설팅 성과 또는 사회적가치 사례 발굴·확산 등의 사업성과 및 제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사업 개요, 컨설팅 과제 성과 등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공고사항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있음

참고 1

2022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유형	표준형	자율형		
		지속성장형	공동형	협업활성화
지원 내용	경영현안 해결 및 경제적·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 제공	경영·기술 전 분야의 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지원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해결지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공동의 성장 전략 구축지원
선정 방식	주제	분야별 지정	수요자 선택	
	컨설팅 기관	분야별 컨설턴트 매칭 ※ 수행사 1개소 사전 선정	수요자 선택 (진흥원 Pool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협업활성화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우대)	
	프로세스	컨설팅기관 선정→사전진단→ 자문검토회의(최종평가/매칭) →선정→개별 컨설팅	사전상담→컨설팅기관 매칭 (자율매칭/사전진단-매칭 中 선택) → 최종평가 →선정→개별(공동)컨설팅	
	선정 심사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컨설팅주제-컨설팅기관-컨설팅계획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지원 범위	1 ~ 6백만원 내외	제한없음 (협업활성화: 컨설팅 비용+ 공동사업 추진 실행비용 지원)		
지원 한도	- 총 5회(연간 1회 지원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000만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			
기업 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 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 ×30%)}
2,500만원 초과	950만원		{550만원 + (2,500만원 초과 금액×40%)}	

※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참고 2

자율형 컨설팅 추진 절차

단 계	수행방법
컨설팅기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컨설팅기관→진흥원) ○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진흥원)
↓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담 실시(신청기업→지원기관)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지원기관→신청기업) ○ 수행계획서 작성(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 ○ 경영컨설팅 신청(신청기업→진흥원)
↓	
최종평가 (대면, PT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진흥원)
↓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평가 점수를 산정(대면평가 점수+우대가점)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 ○ 착수금 지급(수진기업→컨설팅기관) 확인
↓	
중간 보고 및 중간(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컨설팅기관) ○ 중간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진흥원)
↓	
완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진흥원) ○ 만족도 조사(수진기업)
↓	
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급 통보(진흥원→컨설팅기관) ○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컨설팅기관, 진흥원)
↓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점검 점수(70%)+만족도 점수(30%)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참고 3

수진기업 선정 평가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선정 평가표

신청기업명			
평가일	20	평가위원	(서명)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
신청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및 추진의지 (30)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 10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10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10
	결과의 활용가능성 (10)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 10
	소 계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	수행방안 (25)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10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KPI) 적절성	/ 5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5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5
	사업관리방안 (15)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10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5
	사업예산 (5)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투입일) 산정의 적절성	/ 5
	사업완료 (15)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5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 10
	소 계		
가점사항 (공동형은 미적용)	(진흥원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가점사항 집계)		/ 5
합 계			/ 100
평가의견			

참고 4

컨설턴트 등급 및 기준

□ 학력 및 경력기준

- 컨설팅 수행이력의 증빙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한다.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단가 (VAT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7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484,000

* (예시)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사실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6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이력이 있으면 인정

□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7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 	484,000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77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29,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84,000

참고 5

통합정보시스템(SEIS)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전문컨설팅 신청·조회 화면> 첨부파일 제출 방법

전문컨설팅 신청·조회			
<p>● 첨부파일</p>			
전문 컨설팅 수행계획서 (표준형의 경우 신청서)	테스트.pdf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테스트.pdf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테스트.pdf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테스트.pdf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테스트.pdf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우대 가점 관련 증빙서류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전문컨설팅(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그 외 제출서류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통합정보시스템(SEIS) 메뉴명	제출 방법
전문 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첨부(ppt 파일 권장)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5-1, 5-2호】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각각 작성하여 압축(zip) 첨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6-1, 6-2호】 신청기업, 컨설팅기관 참여 인원별 각각 작성하여 압축(zip) 첨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록증 사본 첨부(pdf 권장)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 첨부(최근 결산이 완료된 해부터 3개년)
우대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압축(zip)하여 첨부 (【별지 제3호】 과제 발굴 확인서 해당 사항 있는 기업은 해당 칸에 첨부)
전문컨설팅(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별지 제7호】 작성 후 첨부(hwp 파일 권장)
그 외 제출서류	【별지 제2호】 수요기술서 작성 후 첨부(hwp 권장)

※ 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정보 작성 시 기업 대표번호가 아닌 지원사업 대응 책임자, 담당자 개인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책임자: 신청기업 관리자급 PM 인원 / 과제책임자: 컨설팅기관의 과제 책임 컨설턴트

□ 우대 가점사항 증빙 방법

점수	구분	첨부 방법
1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 신청 종이거나 지원 받은 경우	금융 지원사업의 명칭이나 지원대상, 신청 기업명이 확인되는 사업 참여 협약서, 선정 공고 또는 안내 내용, 제출한 신청서 등
	직전년도 매출액 15억 이상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직전년도의 매출을 확인 가능한 서류
	현재 유급근로자 수 3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신청시점 근로자 현황 확인 가능한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인증 일자를 확인 가능한 서류
2점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 공시(기본·확장공시) 참여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SEIS의 경영공시 신청 목록 화면 캡처 권고)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 포상, 공모에 선정 되는 등 우수성 인정 기업	기관명 및 신청기업명이 확인되는 상패, 공고문, 선정 안내문 등
	자율형 전문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기업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 공고의 SVI 측정기업 모집에 참여한 기업에 한함)
3점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 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주관했던 협력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본 파일 첨부 (협력기관 직인을 포함하여 pdf 사본 권고)

참고 6

사전진단 신청서 양식

※ 아래 표는 신청 시 작성 항목 안내 용도로, 실제 진단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전진단 공고” 화면으로 이동하시어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사전진단 신청서							
컨설팅 필요분야 (3개 이내 선택)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input type="checkbox"/> 기업문화 및 조직 혁신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input type="checkbox"/> 자원개발(지자체·기업·NGO연계) <input type="checkbox"/> 홍보/마케팅/영업전략 <input type="checkbox"/> 시장개척/판로개척 <input type="checkbox"/>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기술도입 <input type="checkbox"/> 생산현장·품질관리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원가절감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브랜드 관리 <input type="checkbox"/>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input type="checkbox"/> 인사 노무 전략 <input type="checkbox"/> 구조조정 <input type="checkbox"/> 자금계획 및 조달 <input type="checkbox"/> 소셜 임팩트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구체적으로 기재)						
진단 요청 내용	신청기업의 최근 경영 현안 및 컨설팅 필요 분야						
신청기업	기업명		인증 구분	예비	<input type="checkbox"/>	인증	<input type="checkbox"/>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e-mail		팩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사전진단”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총괄책임자) :				(기관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1. 유관사업 참여 경험

① 진흥원 주관 컨설팅*, 교육, 지원사업 참여 실적(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금액(천원)

② 지자체, 정부, 타 기관 지원 사업(컨설팅 포함) 참여 실적(최근 5년간)

연도	지원기관(부처/지자체/기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2. 신청기업의 상세 컨설팅 수요

가. 컨설팅 필요성 및 신청 계기	
○ 컨설팅 필요성	-
○ 컨설팅 희망 내용	-
나. 컨설팅 기대효과	
○ 컨설팅 기대 성과목표	-
○ 컨설팅 활용 계획	-
○ 예상 사업비 규모	
자부담금 예상 한도액	_____천원 ~ _____천원
(예상 한도액은 컨설팅 추진 시 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부담금 최대 범위이며, 전체 컨설팅 금액 대비 자부담금의 평균 비율은 10~15% 내외임)	

※ 사전진단 신청 공고 바로가기(상세보기 클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http://socialenterprise.or.kr)